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11. 5 선고 2023가단59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피고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반석

담당변호사 임재화

변론 종결2024. 8. 20.

판결 선고2024. 11.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314,437원 중 13,898,900원에 대하여는 2022. 5. 8.부터, 126,415,537원에 대하여는 2022.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314,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육 및 축산물 가공과 이와 관련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한우사육, 농산물의 생산, 유통, 육류 가공식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2022. 5.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연대보증지급각서

[1] 주채무자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채무금의 표시

[가] 채무금액 : 160,314,437원

1) 미지급 임가공비 : 33,898,900원

2) 미지급 물품대금 : 126,415,537원

* 2022. 4. 30. 기준

[나] 주채무자의 채무금 변제 이행방법

① 1차 중진공 자금 대출받는 즉시 임가공비 33,898,900원 중 20,000,000원 지급보증서 상계하고, 13,898,900원 내일(2022. 5. 7.) 피고 회사 대표이사 C 사장님이 최우선으로 상환하고 종결한다.

원고 법인계좌에 입금상환 처리한다.

② 2차 기술보증기금 대출받는 즉시 미지급 물품대금 126,415,537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상환 처리한다.

*상환기간은 2022년 5월 말일까지

[2] 연대보증의 약정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위 주채무자의 채무금에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다.

만약 주채무자 대표 E이 미지급 물품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 C1) 사장이 현금보관증을 2022. 12. 30.까지 써주기로 약속한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민, 형사)인 조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입금 약속한 날까지 미이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위 채권금액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도 각서합니다.

※특약사항

만약 위 조건이 22년 5월 말일까지 이행 못할 경우 피고 C 사장과 원고 상호간 신뢰회복 차원에 한우 공급 계약(등급제로) 주에 5~10두(두수 서로 협의 가능), 여신기간 2주 이상으로 하는 공급계약 체결하기로 한다.

연대보증인

1. 피고 회사

2. 피고 C

원고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22. 5. 6. 이 사건 연대보증지급각서의 내용과 같은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D의 주채무 중 140,314,437원(=160,314,437원 - 20,000,000원) 및 그 중 13,898,900원에 대하여 위 이행기

다음 날인 2022. 5. 8.부터, 126,415,537원에 대하여 위 이행기 다음 날인 2022.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피고들이 위 140,314,437원 전액에 대하여 2022. 5. 8.부터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이행기 도래일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126,415,537원에 대하여도 2022. 5. 7. 이행기가 도래하고 2022. 5. 8.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을 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D에 대하여 442,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대출실행 및 그 자금으로 채권을 회수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위 압류를 해제하되, 'D가 대출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그 대금을 연대보증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D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실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인데, 위 정지조건(대출실행)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지조건부 계약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연대보증지급각서의 문언상 '피고들은 주채무자의 채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다', '입금 약속한 날까지 미이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위 채권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도 각서한다'고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와 같은 연대보증의사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라는 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연대보증지급각서에 주채무자의 변제 이행방법으로서 대출즉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주채무자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일 뿐 대출의 실행이 채무발생의 조건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며, 주채무의 지급기한(2022. 5. 7. 또는 2022. 5. 말경)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상 주채무 중 13,898,900원은 피고 C이 2022. 5. 7.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2022. 5. 7.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다음 날로서 당사자들이 기대한 대출실행 이전 시점인바, 이는 대출실행과 무관하게 확정적인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것임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마) 원고가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였고, 실제 피압류금액이 8,350,046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압류가 채무자인 D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D에 실질적으로 변제를 촉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해제에 따라 변제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 제3자의 확정적인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대출실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신뢰한 피고들 입장에서 위와 같은 확정적인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할 개연성은 상당하다.

바) 피고들이 D의 채권자라거나, 주채무를 부담할 법률적인 이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을 배척하고 조건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인경

1) F은 C의 오기로 보인다.